

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2. 7. 15

제안자 : 김정복 의원외

1. 수정이유

도민에게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불명확한 용어를 적합한 용어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제6조 “게시자료 관리”를 “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”로 하고, 제1항 내용중 “게시자료”를 “홈페이지 게시자료”로 하며, 제2항 제9호 “연습성, 오류, 장난성의 내용 등”을 “기타 연습성, 오류, 장난성의 내용 등”으로 한다.
- 제7조 내용중 “다만,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를 “다만,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공하지 아니한다.”로 한다.
- 제10조 제2항 내용중 “다만,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를 “다만,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”로 한다.

中 郡 北 도 인 터 네 트 시스 템 설 치 및 운 영에 관 한 조례 안에 대 한 수 정안

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 “게시자료 관리”를 “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”로 하고, 제1항 내용중 “게시자료”를 “홈페이지 게시자료”로 하며, 제2항 제9호 “연습성, 오류, 장난성의 내용 등”을 “기타 연습성, 오류, 장난성의 내용 등”으로 한다.

안 제7조 내용중 “다만,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를 “다만,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공하지 아니한다.”로 한다.

안 제10조 제2항 내용중 “다만,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를 “다만,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조례안	수정안
<p>제6조(게시자료 관리) ①관리부서의 장은 게시자료에 대하여 기간을 정 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1~8(생략)</p> <p>9. 연습성, 오류, 장난성의 내용 등</p>	<p>제6조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 ①관 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 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1~8(생략)</p> <p>9. <u>기타</u> 연습성, 오류, 장난성의 내 용 등</p>
<p>제7조(자료 제공) 이용자가 수록된 자 료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비영 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<u>그러하지 아니하다</u>.</p>	<p>제7조(자료 제공) 이용자가 수록된 자 료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비영 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<u>제공하지 아니하다</u>.</p>
<p>제10조(민원처리 공개) ①(생략)</p> <p>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,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의 전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민원인이 공 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<u>그러하지 아니하다</u>.</p>	<p>제10조(민원처리 공개) ①(생략)</p> <p>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,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의 전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민원인이 공 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<u>공개하지 아니한다</u>.</p>